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?

근로시간은 줄어들고 월급은 그대로!

법정기간(임신 12주 이내, 36주 이후)에 있는 임신근로자는
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
제도입니다. (근로기준법 제74조)